

[첨부1]

국제우편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우리기업은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우정청이 체결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이용을 신청하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기업정보를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우정청이 공유하는데 동의합니다.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본사				
	공장				
수출품목					
사업업태	제조 (), 무역 () 기타()				
카탈로그	국문 (), 영문 (), 중국어 (), 일본어 (), 없음 ()				
발송내역	이용 우편서비스				
	주요발송품목				
	월평균 물량		통	월평균 금액	천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명 (직명)	()			

※ 추가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② 업체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021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첨부3]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신청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금계좌	

접수내역

(단위: 건, 원)

접수월	수량	접수품목	접수금액 (할인 전)	지원금 (접수금액의 28%)
2020.0월	00	0000	000	000

상세접수내역

(단위: 건, 원)

접수일	수량	접수품목	접수금액	수취인	
				국명	업체명
2020.00.00.	00	0000	000	일본	000
2020.00.00.	00	0000	000	중국	000
			...		
합계	00		000		

위와 같이 국제특송(EMS)을 발송하였으며,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업 체 명 (인)

[첨부 4]

일괄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서(사용계약)

(이하 “○○사”이라 한다)과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이라 한다)간에 EMS 국제특급 이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가 우체국의 EMS 국제특급우편(EMS프리미엄 포함, 이하 EMS로 표기)을 접수하여 배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사와 우체국간 EMS 이용 계약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은 기본계약과 동일하며, 계약종료에 대한 사항은 우체국에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제3조(회원사 자격증명) ○○사는 ○○사(기본계약자)의 사용계약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자료는 기본계약에서 정함)

제4조(EMS의 접수) ① ○○사와 우체국은 발송하는 EMS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는 만국우편협약 및 우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정한 폭발성 물질, 발화성물질, 인화성물질, 유독성물질, 공안방해 및 기타 위험성 물질 등 우편금제품을 우체국에 접수할 수 없다.

② ○○사는 우편물을 발송할 때 EMS 주소기표지의 발송인 란에는 통관, 손해배상 및 반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1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EMS 주소기표지에 기재된 발송인은 세관 신고용 송장(Invoice)에 기재된 발송인과 동일인이어야 한다.

③ 다만, 월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 및 사용자와 계약한 우체국사정에 따라 방문접수는 제한될 수 있다.

④ 내용품 가격이 손해배상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인 경우, 보험취급하여 받

송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발송인이 부담한다. 내용품 가격이 최대손해배상 이하인 경우는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배상액이 높아지지 않는다.

제5조(EMS의 포장) EMS 포장불량으로 인한 파손은 ○○사의 책임이므로 ○○사는 우체국이 정한 중량·부피 등의 규격에 맞게 EMS를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6조(EMS 요금감액 요건 및 범위) ① 우체국은 ○○사(기본계약)와 ○○청간 체결한 기본계약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한다. 감액률 변동에 대한 사항은 기본계약을 체결한 ○○청에서 ○○사(기본계약)에게 통보한다.

※ 감액률 변경에 대한 사항은 우체국에서 사용계약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② e-shipping 및 수출우편물 정보제공 이용감액은 이용물량에 한하여 적용하며, 국가(약호 포함), 중량 등 오입력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EMS 기표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품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픽업에 따른 수수료인 방문접수수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픽업을 할 수 없는 소속우체국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픽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7조(배달의 책임과 의무) ① 우체국은 ○○사로부터 접수한 EMS를 상품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신속·정확·안전하게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② ○○사는 우체국이 EMS의 안전한 배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금 및 요금 납부) ① ○○사는 발송이 예상되는 EMS 1개월분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사는 우체국에 접수하는 EMS 요금을 “우편요금즉납”, “우편요금 후납”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요금후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우편요금후납 계약신청서”를 작성한다.

③ 담보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 보증서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본부장이 고시로 정한 담보금 면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담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우편요금 등을 납부기한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경우에는 우편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우편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한 우편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우편요금 등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우편법령 개정으로 연체료 변경시 변경된 요율 적용)

제9조(변경사항 신고) ○○사는 다음의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5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의 주소, 성명, 회사명
- ② 요금납부 방법 변경
- ③ 사용 인감 변경

제10조(사고책임과 손해배상) ①① 우체국은 ○○사가 발송한 EMS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분실·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만국우편협약 등 우편관계법령에 근거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한다.

② 우체국은 ①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금액이 손해배상 규정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에게 그 실제 손해금액을 배상한다.

③ ○○사는 우체국에 EMS를 발송한 날로부터 4월 이내(단, EMS 프리미엄은 3월 이내, 카할라국가행 배달보장서비스는 30일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신청하고 1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

제11조(계약의 일시정지) 우체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에 대하여 EMS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우편관서의 변경) ① ○○사는 사업장 이전 등에 따라 계약우편관서를 변경하여 계약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우체국에 [별표 5]의 “계약국제특급우편 계약우편관서 변경(전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실제 전출일은 ○○사가 우체국에 고지한 전출일자를 기준으로 전입 2일전까지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은 변경 전 계약우편관서에서 계약한 계약만료일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출일 이후 10일 이상(영업일 기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항은 기본계약에 따른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사와 우체국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상호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사와 우체국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우체국은 ○○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계약기간 중에 계약 해지 후 재계약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재계약 하는 경우
3. EMS 요금 연체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 ○○사와 우체국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상호간에 일어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간 재계약을 금지한다.

제15조(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① ○○사와 우체국은 EMS를 수집·접수배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우체국은 EMS 이용계약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우체국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민원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제16조(신용정보 활용) 우체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조회를 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적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 및 취급조건은 만국우편협약, 국제우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와 우체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소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 후 ○○사와 우체국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_____

(우체국) _____

성명 :

우체국장